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(안도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5.

발 의 자 : 안도결 · 정준호 · 임호선

전용기 · 이정문 · 윤준병

정진욱 · 김우영 · 이언주

주철현 · 박지혜 · 이주희

이건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, 결산상 잉여금을 세
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며,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
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중대한 세입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는
재량에 맡겨져 있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
흡하고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
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
출할 수 있도록 하고,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,
세입결손 보전 및 국채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
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
려는 것임(안 제89조의2 신설 등).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별표 2”를 “이 법 또는 별표 2”로 한다.

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9조의2(세입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) 정부는 세입예산 재추계 결과 등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9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하여야 한다”를 “사용하여야 하고, 그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제90조의2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0조의2(미래대응기금의 설치) ①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과 세입의 변동에 대응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 국가발전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한다.

② 미래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(제89조의2에 따른 세입예산의 경정에 따라 발생한

초과 조세수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
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금액을 포함한다)

2. 다른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3.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4. 그 밖의 수입금

제90조의3(미래대응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
장관이 운용·관리한다.

② 미래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미래성장동력의 확충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
2. 계층 간 자산·소득 격차의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의 지원
3.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 보전 및 국채의 상환
4. 청년세대를 위한 투자 및 미래 산업 분야 인재 양성
5. 그 밖에 미래대응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사업

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대응기금
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탁
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·관리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금의 설치)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,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<u>별표 2</u> 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.	제5조(기금의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 법 또는 별표 2</u> ----- ----- -----.
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② (현행과 같음) <u>제89조의2(세입 변동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)</u> 정부는 <u>세입예산 재추계 결과 등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.</u>
제90조(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) ① ~ ③ (생 략)	제90조(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) ① ~ ③ (현행과 같

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⑤ ~ ⑨ (생략)

<신설>

음)

④ -----

-----사용하여야 하
고, 그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
금은 제90조의2에 따른 미래대
응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⑤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90조의2(미래대응기금의 설치)

① 정부는 거시경제 여건과 세입의 변동에 대응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중장기적 국가발전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한다.

② 미래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(제89조의2에 따른 세입예산의 경정에 따라 발생한 초과 조세수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금액을 포함

<신 설>

한다)

2. 다른 회계·기금으로부터의
전입금

3.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으로 생
기는 수익금

4. 그 밖의 수입금

제90조의3(미래대응기금의 운용

· 관리) ① 미래대응기금은 기
획예산처장관이 운용·관리한
다.

② 미래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
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미래성장동력의 확충 및 관
련 기반시설의 구축

2. 계층 간 자산·소득 격차의
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의 지원

3.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 보전
및 국채의 상환

4. 청년세대를 위한 투자 및 미
래 산업 분야 인재 양성

5. 그 밖에 미래대응기금의 설
치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대
응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

사무의 일부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
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
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